대통령령 제 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지분 또는 권리(이하 "사업수익권"이라 한다)
- 가.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 나.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 다. 그 밖에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
- 제6조의3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24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를 "법 제9조제 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 1.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제6조의3제3항제1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 7.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초기 투자업무

-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법 제7조제6항제3호를 "법 제7조제6항 제4호로 한다.
- 제7조제5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중 "법 제7조제6항제3호"를 각각 "법 제7조제6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법 제7조제6항제3호의 경우 :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 제37조제1항제2호 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계열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가 설립 ·운용하는 투자회사등(법 제182조제1항의 투자회사등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 제45조제2호바목 중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 제5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에 "5)"를 "6)"으로 한다.
- 5) 고유재산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업무제51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미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최초 겸직 또는 파견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바목중 "사모투자전문회사(법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

- 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 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 제68조제2항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으로 한다.
-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전문사모집합투 자기구등"을 각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 제77조의4제1항 중 "부분"을 "후단"으로,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 제77조의5제2항제1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 제80조제1항제1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카. 사업수익권
- 제80조제6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8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10과"를 "100분의

5와"로, "100분의50"을 "100분의 25"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100분의 10을"을 "100분의 5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10을"을 각각 "100분의 5를"로 한다.

제211조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을 "제6항"으로 하며. 제8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22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60조제1항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49조의12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67조를 삭제한다.

제268조제4항제5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271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절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71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 ② 법 제24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1.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전 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1억원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3억원 제2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71조의2 (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2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 ② 법 제249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이하 "외국 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별표2 제4호가목·라목 및 마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같은 표 같은 호 가목 중 "인가"는 "등록"으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으로 본다.
  - ③ 법 제249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 표 3 가.와 같다.

- ④ 법 제249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투자운용인력(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근 임직원으로 3인 이상 갖출 것
-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라.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 ⑤ 대주주(법 제249조의3제2항제5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 대주주가 별표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갖출 것.
- 2. 대주주가 별표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4호가목·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에 같은 표 같은 호 가목 중 "인가"는 "등록"으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으로 본다.
- ⑥ 법 제249조의3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 ⑦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이하이 절에서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 2. 법 제4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 도록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 ⑧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항에서 "지점등"이라 한다)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등 전부를 하나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본다. 이 경우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경영하기위하여 국내에 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⑨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3부터 제271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71조의3 (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법 제249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249조의3제2항제2호의 경우: 해당 등록업무 단위 최저자기 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

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49조의3제2항제5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유지할 것

가.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 및 3)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나.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3) 및 제4호라목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하고, 제4호라목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본국의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로 본다.

다. 법 제249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 호 나목의 요건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에 "최대주주"는 각각 "외국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제271조의4(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9조의3제3항에 따라 금

용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야 한다.

- 1. 상호
-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 3. 임원에 관한 사항
- 4. 경영하려는 등록업무 단위(법 제249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업무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7. 대주주나 외국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 2.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 3.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 4.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를 말한다)

- 6.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7. 등록신청일(등록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등록신청이나 겸영금 융투자업자의 등록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 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 8. 대주주나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49조의3제2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0.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법 제249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⑤ 법 제249조의3제4항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 융위원회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전문사모집합투자업등록을 한

-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등록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271조의5(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법 제249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49조의2제2호 에 해당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 제271조의6(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① 법 제249조의 의5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법 제249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자 중 광고하는 날의 금융투자상품(법 제74조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을 포함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투자자를 말한다.
  - ② 법 제249조의5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을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 제271조의7(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요건) 법 제 249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 1. 투자회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 중 법 제27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

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가목의 요건으로 한정한다.

- 가. 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감독이사는 법 제24조에 적합할 것
- 나. 설정·설립 당시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 2.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설정·설립 당시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 중 법 제279조제 지원한 후단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1조의8(변경보고의 적용 제외) 법 제249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법 및 이 영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2. 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제271조의9(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9조의6제5항에 따른 보고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2. 투자목적 · 투자방침 및 주된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 3.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 4.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과 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감독이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5.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6. 신탁업자에 관한 사항
- 7.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한다.
-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한다)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
- 3.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의 사본(집합투자기구 보고를 위하여 이미 제출한 업무위탁계약서와 다른 경우만 제출한다)
  - 가.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신탁업자

- 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전담중개업 무를 제공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③ 법 제249조의6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서면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하며, 집합투자규약, 등기부 등본, 주요계약서 사본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이 같은 조 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보고요건 및 변경보고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의 신청과 검토, 보고서면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271조의10(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법 제249조의7제1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0을 말한다.
  - ② 법 제249조의7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 ③ 법 제249조의7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1년 을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가 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 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취 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법 제249조의7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합병·해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 를 말한다.
- ⑤ 법 제249조의7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뚜렷하게 떨어져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그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 ⑥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9조의7제3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1. 금전차입 및 파생상품 매매 현황
-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 ⑦ 제6항에 따라 보고의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 2.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매년 12 월 31일

- ⑧ 법 제249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 2. 제93조제2항의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 3. 화매연기 또는 화매재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⑨ 법 제249조의7제4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이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른다.
- 제271조의11(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 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1. 다른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법 제238조제1항에서 정한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 원회가 정한 가격으로 납부할 것
  - ② 법 제249조의8제8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 6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법 제249조의8제8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제68조제5항제10호의 행위

- 2. 제68조제5항제13호의 행위
- 3. 제68조제5항제14호의 행위 중 집합투자증권 판매와 관련하여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제271조의12(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49 조의9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란 제 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 ② 법 제249조의9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법 제249조의9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 2. 법 제2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의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 3.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 ④ 법 제249조의9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 2. 변상 요구
  -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 ⑤ 법 제249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 ⑥ 법 제249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 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1조의13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71조의13부터 제271조의2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1조의13(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① 법 제249조의10제4항 본문에 따른 보고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법 제249조의10제2항에 따른 등기사항
-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정관(법 제249조의10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 나. 대주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유주식수 등 대주주의 내역
-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 4.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③ 제1항에 따른 서면을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업무집행사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서면을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249조의10제4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항에 따른 보고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⑤ 법 제249조의10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출자한 지분의 합계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전체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

-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 3.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이 유한책임사원으로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 전체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는 비율 이상을 출자한 경우
- 4.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으로 출자하기로 약정한 지분의 합계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전체지분의 100분의 30이상으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 5. 그 밖에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⑥ 법 제249조의10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 1. 법 제249조의10제1항제3호의 사항
- 2.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 3.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⑦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 각 호의 사항 중 제2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었던 연도의 다음해의 1월 10일 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관련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보고 의 신청과 검토, 보고서면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① 법 제26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② 법 제249조의11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업무"란 제271조의18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③ 법 제249조의11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 ④ 법 제249조의11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 1억원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3억원
  - ⑤ 법 제249조의11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 ⑥ 법 제249조의11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 2. 유한책임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및 출자 금액

- 3. 제271조의18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절차
- 4.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금액 및 투자 구조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① 법 제249조의11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 249조의11제8항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을 말한다.
- ⑧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전체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해외 직접투자[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에 법 제249조의12에 따른 방법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설립 목적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⑨ 사원은 업무집행사원이 출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자하기 로 약정하는 방식으로 출자할 수 있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원의 출자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271조의15(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법 제249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

- 을 합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 1. 지분증권, 신주인수권(그 밖의 신규발행 지분증권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이하 이 항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 2. 지분증권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지분증권 등을 상호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 ②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2.「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3.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 5. 외국법인 및 그 종속회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속회사에 상당하는 외국회사를 말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 중 다음 각 목의 자산을 합한 금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그 외국법인
- 가.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
- 나.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한 금전채권
- 다.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나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권리의 행사 등으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회사와 유사한 회사로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
- ③ 법 제249조의1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주 권 관련 사채권(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71조의17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 1.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과 주권 관련 사채권의 전환권·신주인수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정한 발행주식을 말한다)의 합계가 그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투자 2. 투자계약 등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투자하는 투자
- ④ 법 제249조의1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내파생 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을 말한다.
- ⑤ 법 제249조의1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 1. 투자대상기업의 금전채권에 대한 투자(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투자대상기업이 보유하는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또는 금전채권 등에 대한 투자
-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비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비
-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개 선시설
- 5. 투자대상기업의 사업부분을 양수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
- 제271조의16(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등) ① 법 제249조의1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대출"이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을 말한다.
  - ② 법 제249조의1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또는 「우 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와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회사를 말한다.

- ③ 법 제249조의1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 ④ 법 제249조의1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 ⑤ 법 제249조의1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 2.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 제271조의17(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제한 등) ① 법 제249조의1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 ② 법 제249조의1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이 법 제249조의12제1 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취득하기에 부족한 경우
  - 2. 제271조의15제5항제4호의 시설 및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 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법 제249조의1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

- ④ 법 제249조의1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이 정지된 경우
- 2. 투자대상기업이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 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⑤ 법 제249조의1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⑥ 법 제249조의12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 ① 법 제249조의1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중단된 경우
-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⑧ 법 제249조의1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의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말한다.
- ⑨ 법 제249조의12제9항에 따른 보고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 2.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매년

## 12월 31일

- ⑩ 제9항에 따른 보고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제271조의18(투자비율의 산정방식 등) ①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각각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② 법 제249조의12제2항제3호 및 제3항 본문의 투자비율은 「국가 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이 되는 경우로서 제271조의14제9항에 따라 출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자하기로 약정하는 방식 외의 방법으로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 1. 법 제249조의12제2항제3호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기금의 출자금 범위에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금액과 그 증권 취득금액을 각각 제외하고 계산한다.
  - 2. 법 제249조의12제3항 본문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경영참 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에서 기금의 출자금액을 제외 하고 계산한다.
  -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투자대상기업 선정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또는 선정
  - 2.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 그 가격·시기·방법 등의 결정
-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이나 투자목적회사재 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로서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 무
- ④ 법 제249조의12제3항 단서, 제4항 단서, 제5항 단서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서식 및 절차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271조의19(투자목적회사) ① 법 제249조의1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 ② 법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를 한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으로서 출자전환 등을 한 자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 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법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10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고,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 또는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포함한다)가 아닐 것
    - 나. 투자목적회사의 전체 지분의 100분의 10 이상을 투자할 것

- 다. 법인의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 자기구의 전체 사워의 출자금액보다 크지 않을 것
- 라.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③ 법 제249조의1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투자목적회사가 차입하거나 채무보증을 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자기자본의 100분의 300을 말한다
- ④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은 제271조의1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 ⑤ 투자목적회사는 그 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그 회사의 재산의 운용을 위탁하여야한다.
- ⑥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의 목적으로 운용하고 남은 투자목적회사재산을 법 제249조의1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⑦ 투자목적회사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에 대한 평가는 제260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⑧ 법 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49조의12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서식 및 절차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① 법 제249조의1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란 법, 이 영과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 1. 「은행법」
- 2. 「한국산업은행법」
- 3. 「중소기업은행법」
- 4. 「한국수출입은행법」
- 5. 「보험업법」
- 6. 「상호저축은행법」
- 7. 「여신전문금융업법」
- 8. 「신용보증기금법」
-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10. 「신용협동조합법」
- 11. 「새마을금고법」
-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1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15. 「부동산투자회사법」
- 16. 「선박투자회사법」
- 17. 「산업발전법」

- 1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19. 「한국정책금융공사법」
- ② 법 제249조의14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정관을 위반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벗어나는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 하는 행위
-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업무 집행사원의 고유재산 운용에 이용하는 행위
- 4. 특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나 투자목적회사의 이익을 해 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5. 법 제249조의11부터 제249조의18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 ③ 법 제249조의1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 제271조의21(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249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 ② 법 제249조의15제1항제2호에서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 2.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3. 유한회사의 이사 또는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
- ③ 법 제249조의1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2명을 말한다.
- ④ 법 제249조의1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 1. 건전한 재무상태: 자기자본이 차입을 통해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2. 사회적 신용: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에 적합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최근 3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최근 3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 ⑤ 법 제249조의15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법 제249조의21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직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직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

- 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 3.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 ⑥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 (제4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하고,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하며, 등록검토의 방법·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은 "운용인력"으로,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로 본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집행사원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271조의22(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① 법 제249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업무집합사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2. 업무집행사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 3.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계열회사로 보지 아니 한다.

- 가. 당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또는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공동으로 투자하 는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나. 당해 업무집행사원이 운용하는 경영참여성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또는 투자대상기업
- 다.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
- ② 법 제249조의1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 1. 제8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 2.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실행하는 거래
- 3.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 ③ 법 제249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총액의 100분의 5를 말한다.
- ④ 법 제249조의16제4항 본문 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제8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 ⑤ 법 제249조의16제4항제2호에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유한 책임사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

자기구의 출자지분을 100분의 30이상 보유한 자를 말한다.

- 제271조의2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① 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 ② 법 제249조의18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편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처분기한 연장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절차, 서식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제271조의24(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① 법 제249조의1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② 법 제249조의19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이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1개이상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나 투자목적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만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 ③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경영참여 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 회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1조의25(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법 제249조의

- 20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의 명칭, 사업내용, 재무현황, 계열회사 변동내역,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반현황
-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의 임원현황
-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의 소유지분현황
- 4.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간 출자현황
- 제271조의26(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49 조의21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별표 10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 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별표 10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 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3. 별표 10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법 제249조의21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 ③ 법 제249조의21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 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④ 법 제249조의21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 2. 법 제249조의21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의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 3.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 4. 법 제249조의15제7항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⑤ 법 제249조의21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1.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 2. 변상 요구
-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취할 수 있는 조치
- ⑥ 법 제249조의21제3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① 법 제249조의21제3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1. 주의

- 2.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 ⑧ 법 제249조의21제3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1. 경고
- 2.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 ⑨ 법 별표 6 제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같은 항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1. 투자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
  -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4.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 ② 법 제249조의2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이란 채권금융기관의 총 채권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해당기 업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 ③ 법 제249조의22제1항제5호에서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합병·전환·정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이란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영업양수도(일부양수도를 포함한다), 자산매각, 지분양도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재무제표[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감사인의 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정적의견이나 의견표명을 거절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 표명하는 감사의견을 말한다) 이상의 감사의견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의 자본금의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 2.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 대한 부채총계의 비율(이하 "부채비율"이라 한다)이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에 따른 해당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채비율을 말하되, 기업경영분석에 해당 업종의 부채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업종의 평균 부채비율로 한다]의

- 1.5배를 초과하는 기업
- 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한 손실액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
- 가. 어음의 부도
- 나. 외상매출금 또는 수출대금의 미회수
- 다. 보증채무의 이행
- 4.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회사채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기업
- 5.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따른 영업 손실이 최근 2년간 연속하여 발생한 기업
- ④ 법 제249조의2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법 제249조의2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업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 ⑤ 법 제249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 ⑥ 법 제249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 ①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조의22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남은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 1. 증권에 대한 투자
- 2.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 3. 재무구조개선기업의 인수·합병에 드는 자금의 대여 또는 지급의 보증
- 4.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5.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의 예치
- 6.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 7.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 ⑧ 법 제249조의2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 ⑨ 법 제249조의2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⑩ 법 제249조의22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 ① 법 제249조의2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이 정지된 경우
- 2. 투자대상기업이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 3.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 4.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 만료 등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5. 투자대상기업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사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

가 있는 경우

제272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절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제5편제10장(제290조부터 297조의2까지, 299조부터 300조의2)을 삭제한다.

제36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거래소는 법 제399조제2항에 따라 거래소의 재산과 공동기금을 손해배상에 충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위약한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을 우선하여 사용할 것
- 2. 제1호에 따라 충당한 후에도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재산 중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하는 금액을 우선하여 사용할 것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충당한 후의 부족분에 대하여는 회원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제36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거래소는 위약한 회원으로부터 구상한 경우에는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가 배상한 금액 및 공동기금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은 비용에 충당한다.
- 제387조의2제1항제29호 중 "법 제268조"를 "법 제249조의10"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로하고, 같은 항 제29호의2 중 "법 제272조의2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

사"를 "법 제249조의15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88조의2제1항제18호 중 "제292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을 "제271조의15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6호 중 "제271조의2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271조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의2부터 제1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부터 제23호를 삭제한다.

16의2. 제271조의13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처부서류: 2015년 1월 1일

16의3. 제271조의21제5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취소 요건: 2015년 1월 1일

16의4. 제271조의26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 치: 2015년 1월 1일

별표 1을 별지1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2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3과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4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의8 중 "법 제249조제6항"을 "법 제249조의7제3항"으로 한다.

별표 6 제목 중 "제275조제8항"을 "제271조의12제6항 및 제275조제8 항"으로 한다. 별표 10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제300조제10항"을 "제271조의26제9항"으로 한다.

별표 10 제7호 중 "법 제272조제9항"을 "법 제249조의14제9항"으로 한다.

별표 10 제8호 중 "법 제272조제10항"을 "법 제249조의14제10항"으로 한다.

별표 10 제8호의2 중 "법 제278조의3제2항"을 "법 제249조의22제2항"으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을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제300조의2제6항"을 "제271조의26제6항"으로 한다.

별표 10 제8호의3 중 "법 제278조의3제6항 본문"을 "법 제249조의22제 6항 본문"으로 한다.

별표 10 제12호 중 "제295조제3항"을 "제271조의18제3항"으로 한다. 별표 20 제69호를 삭제한다.

별표 20 제71호의2를 삭제한다.

별표 20에 제71호의2부터 71호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의2. 법 제249조의3제4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내용의 검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71의3.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내용 흠결에 대한보완 요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접수

71의4. 법 제249조의7제3항·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71의5. 법 제249조의9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 기구의 해지·해산명령,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의적 경고 및 주의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의 요구(법 제257조제3항제4호·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1의6. 법 제249조의10제4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설립 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고내용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접수

71의7 법 제249조의11제8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71의8. 법 제249조의12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승인(법 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71의9. 법 제249조의14제7항 전단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항 후 단에 따른 변경·보완 명령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승인

71의10. 법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같은 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접수, 법 제249조의15제3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내용의 검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홈 결에 대한 보완 요구

71의11. 법 제249조의18제2항 단서에 따른 승인

71의12. 법 제249조의19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71의13. 법 제249조의21제1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해산명령,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라목에 따른 조치, 같은 항 제2호라목에 따른 조치,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조치 요구.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1의14. 법 제249조의22 제6항에 따른 승인

별표 20 제79호부터 제8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0 제108호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4항 및 제271조의4제4항"으로 한다.

별표 20 제111의2를 삭제한다.

별표 20 제112호 중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부분 단서에 따른 보고"로 한다.

별표 20에 제142호의2 부터 제142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2의2. 제271조의9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및 검토

142의3. 제271조의12제4항 각 호에 따른 조치

142의4. 제271조의13 제4항에 따른 보고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및 검토

142의5. 제271조의17 제8항에 따른 확인

142의6. 제271조의26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조치별표 20 제148호 및 제148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2를 별지5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집합투자업자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이 영 시행일에 집합투자업자 등이 운용하는 전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총액에서 이 영 시행 후 해지·해산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설립할 수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정·설립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한도는 이 영 시행 후 해지·해산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당시 원본 액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
- ③ 집합투자업자 등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기 위해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한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에 의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

3조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유지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제271조의3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신청에 의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 4조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는 집합 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제271조의2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271조의3제2 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제5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제 182조에 따라 등록된 집합투자기구가 제86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

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같은 호 가목, 나목, 및 다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연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가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사모투자전문

회사"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라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1조의3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33조의4제9호 및 제36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1]

대주주의 요건(제5조제3항 관련)

구 분			요 건						
1.	대주주가	「금융위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따라 금융감독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이 표에서 "금융기 관"이라 한다)인 경 우

원회의 설치 등에 관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 한 법률」 제38조에 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 검사를 받는 기관(경)나.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 영참여형 사모집합투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자기구등 및 기금등다. 해당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은 제외하며, 이하 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이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 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 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 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 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 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라.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모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 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 해한 사실이 없을 것
  -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 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 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 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 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 2. 대주주가 기금등인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경우
- 3. 대주주가 제1호 및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 제2호 외의 내국법인 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 (경영참여형 사모집 할 것 합투자기구등은 제외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

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이거
0 1	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
	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
	할 것
4 1177-1 117414	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
로서 개인인 경우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 것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인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
인 경우	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
	이거나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일 것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
	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
	할 것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
	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해당
	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인가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외국금융회사의 상근임원
개인인 경우	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나.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 것
	다.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
	국인이 본국의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확인이 있을 것
	라.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7. 대주주가 경영참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
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경영참여형
등인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 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나목·다목 및 마목 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나. 제2호의 기금등인 경우: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다. 제3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3호나목·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라. 제4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 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마. 제5호의 외국 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제3호나목(금 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5호다목·라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바. 제6호의 외국인인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6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표 제1호마목 또는 제 5호라목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등인 경우에는 이 표 제7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 2.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3. 이 표 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대주주인 외국 법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이 표 제 5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 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고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가 이 표 제5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 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 변경승인 대상 대주주의 요건(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요 건							
1	대주주가	「금융위	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

검사를 받는 기관(경 영참여형 사모집합투 라 한다)인 경우

- 원회의 설치 등에 관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한 법률 제38조에나.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거나 주채 따라 금융감독원의 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자기구등 및 기금등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은 제외하며, 이하 이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표에서 "금융기관"이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 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 해한 사실이 없을 것
  -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 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 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 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 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 경우
- 2. 대주주가 기금등인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제2호 외의 내국법인 우
- 3. 대주주가 제1호 및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이거 투자기구등은 제외한 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 다. 이하 같다)인 경 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 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 할 것
    - 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 이하일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로서 개인인 경우
- 4. 대주주가 내국인의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 것
  - 나. 제1호다목 및 제3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인 경우
- 5. 대주주가 외국 법인기. 승인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거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

- 의 지주회사일 것
-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 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해당 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개인인 경우
- 6. 대주주가 외국인인가. 승인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외국금융회사의 상근임원 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 나.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 것
  - 다.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 국인이 본국의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확인이 있을 것
  - 라. 제1호다목 및 제3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등인 경우

7. 대주주가 경영참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 형 사모집합투자기구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 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기금등인 경우: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다. 제3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3호가목・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라. 제4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 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마. 제5호의 외국 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5호나목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제6호의 외국인인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6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표 제1호다목 또는 제 5호다목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이거나 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는 이 표 제7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 2. 이 표 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대주주인 외국 법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이 표 제 5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 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고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가 이 표 제5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 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제6조의3제1항 관련)

구 분	요 건
1.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
등에 관한 법률」 제	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
38조에 따라 금융감독	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
원으로부터 검사를 받	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가
는 기관(제2호,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	라. 승인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의 지
인 경우	배주주로서 적합하고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을 것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금융
	기관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

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 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 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의 내부자거래 또는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하기 나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 이 없을 것 2.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가.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산운용을 위탁하지 아니할 것 자업에 관한 법률 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에 따른 투자회사 • 투자유한회사 • 투자 합자회사 및 투자조 합인 경우 3.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기금등인 경우 4.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가.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제1호, 제2호, 제3호 는 기준을 충족할 것 및 제7호 외의 내국나.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인 경우 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 업집단(법 제2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른 비금융회사로 한정한다)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주식취득 자금이 해당 법인이 최근 1년 이내에 유상 증자 또는 보유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등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 의 자금일 것 라.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한도초과보유주주가|가. 주식취득 자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아닐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것 경우 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6.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가. 외국금융회사이거나 해당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일 외국인인 경우 것 나. 자산총액・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다. 해당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최

근 3년간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이 있을 것

- 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 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이 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에 적합할 것
- 마.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 투자기구등인 경우

7. 하도초과보유주주가|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 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투자회사 · 투자유한회사 · 투자합자회사 · 투 자조합인 경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다. 제3호의 기금등인 경우: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라. 제4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마. 제5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바. 제6호의 외국인인 경우: 제4호가목(외국금융회사는 제 외한다) · 다목(외국금융회사는 제외한다) · 라목 및 제6 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 1. 자본총액을 산정할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2.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금융회사 전체의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기업집단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 인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에 따라 산정한 부채비율을 말한다.
- 3. 이 표 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외국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이 표 제6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 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 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

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가 이 표 제6호 각 목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4. 이 표 제7호를 적용할 때에는 이 표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비금융주력자
  - 나.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가 보유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의 합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다만, 서로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사이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및 제2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8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정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바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2항제4호 중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 전문회사"를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 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61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⑦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제5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9제1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 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 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한다.

제3조의9제3항제2호라목 중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

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1100호, 2008.11.4.> 제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라 한다)
- ⑧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8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 대주주의 요건(제10조제4항 관련)

구 분	요 건
1. 대주주가 「금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융위원회의 설	을 뺀 금액(이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
치 등에 관한	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
법률」 제38조	준을 충족할 것
에 따라 금융감	나.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독원의 검사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받는 기관(경영	다. 해당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참여형 사모집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합투자기구는	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제외하며, 이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
"금융기관"이라	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
한다)인 경우	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 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라.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 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 관계 법령(제19조제2항 각 호 에 따른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 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 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 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인 (경영참여형 인 경우
- 2. 대주주가 제1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이 출자하려 호 외의 내국법 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사모집합투자기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구와 투자목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회사는 제외한|다.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 다. 이하 같다) 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인 경우
- 3. 대주주가 내국 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인으로서 개인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 것
  -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인 경우

- 4. 대주주가 외국 가. 허가신청일 현재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을 것
  - 법령에 따라 설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이 출자하려 립된 외국법인 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하 "외국법 기준을 충족할 것
  - 인"이라 한다)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 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해당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 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속 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 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사인 경우

|5. 대주주가 경영|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 참여형 사모집 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합투자기구 또 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 는 투자목적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 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 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 건을 충족할 것

-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나목·다목 및 마목의 요 건을 충족할 것
-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2호나목·다목 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3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제2호나목(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4호다목·라목의 요건을 충 족할 것

#### 비고

1.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허가신청일 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2. 위 표 제4호를 적용할 때에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여서 위 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가 위 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3. 위 표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을 말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 변경승인대상 대주주의 요건(제11조제2항 관련)

구 분	요 건
1 6	J.L. U.
1. 대주주가 금융	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
기관인 경우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거나 주채무
	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 관계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
	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
	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에 따라 허
	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

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 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전 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2. 대주주가 제1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호 외의 내국법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인인 경우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 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 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 이하일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내국 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 인으로서 개인 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 것 인 경우 나.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대주주가 외국 가. 승인신청일 현재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을 것 법인인 경우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해당 외국법인이 속한 국 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 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 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 5. 대주주가 경영 참여형 사모집 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경영참여형 사모 합투자기구 또 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는 투자목적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 사인 경우 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

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3 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제2호다목(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4호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 1. 위 표 제4호를 적용할 때에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여서 위 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가 위 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2. 위 표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을 말한다.
- 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바목, 아목 및 자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업"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업"으로 한다.

⑩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7호에 따른 투자

제14조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u>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u> (제14조제1항 관련)

별표4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4]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 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기업구조개	법 제50조제2항제1호	350
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나. 법 제3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생	법 제50조제2항제2호	350
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다. 법 제47조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법 제50조제1항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		1,000
하지 않은 경우		
2)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500

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항제3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같은 법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 회사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대주주의 요건(제6조의2제5항 관련)

구 분	요 건			
1. 대주주가 금융기관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이 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이하 같다)인 경우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			
1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다.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 (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 대상에서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라. 그 금융기관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대상인대부업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 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마.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 바. 상호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그 금융기관이 대부업자인 경우 에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 및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출 것을 포 함한다)
- 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 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 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 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 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

- 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 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 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 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이 출 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내국법인(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는 기준을 충족할 것
- 한다. 이하 같다)인 경 우
  - 투자목적회사는 제외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 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다.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라.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서 개인인 경우
-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 가.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나.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따라 설립된 외국 법 라 한다)인 경우
- 4.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가. 인가 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는 업무를 경영하고 있을 것
  - 인(이하 "외국법인"이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이 출 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는 기준을 충족할 것
    -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 격 이상의 신용평가 등급을 받거나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 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마. 제1호바목 및 사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우

5. 대주주가 경영참여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 사모집합투자기구 또 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는 투자목적회사인 경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 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 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 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 할 것

-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나목 · 다목 · 바목 및 사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바목ㆍ사목 및 제2 호나목 •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바목·사 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바목·사목, 제2호 나목(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4호 다목 •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 1. 제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호사목 또는 제4 호라목의 요건(외국인인 개인에게는 제4호라목을 준용한 요건을 말한다)만 적 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 회사인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 2.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을 산정할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인가 신청 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3. 이 표 제4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여서 이 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 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 고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가 이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할 때

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이 표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을 말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2]

##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요건(제7조의4제2항 관련)

구 분	요 건
1. 대주주(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등으로 해당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를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다. 그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다. 그 금융기관이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 이하로서 금융위원
가 금융기관인 경우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 이하로서 금융위원 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그 금융기관이 대부업자인 경우 출자금은 금융위원 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 닐 것 마. 상호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그 금융기관이 대부업자인 경 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 및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출 것을 포 함한다) 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

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때 라 허가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 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 에 따라 부실 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 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 내국법인인 경우 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라. 제1호마목 및 바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 가.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 서 개인인 경우 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나. 제1호마목·바목 및 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가. 인가 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경우 는 업무를 경영하고 있을 것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 격 이상의 신용평가 등급을 받거나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 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라. 제1호마목 및 바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우

5. 대주주가 경영참여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 사모집합투자기구 또 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는 투자목적회사인 경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 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 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 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 할 것

-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바목 및 제2호 가목·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바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바목 및 제4호 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 1. 제7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호바목 또는 제4호다목의 요건 (외국인인 개인에게는 제4호다목을 준용한 요건을 말한다)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 2.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승인신청 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3. 이 표 제4호를 적용할 경우에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여서 이 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가 이 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할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4. 이 표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을 말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3]

##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제7조의4제6항 관련)

구 분	요 건
, _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그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일 것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금융기관인 경우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 이하일 것 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1천만원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

	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 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 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금융기관이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 및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출 것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
내국법인인 경우	하일 것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 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일 것
	다. 제1호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 서 개인인 경우	가.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나. 제1호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	가. 인가 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경영하고 있을 것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 등급을 받거나 외국법인이 속한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속한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제1호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우

5. 대주주가 경영참여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 사모집합투자기구 또 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는 투자목적회사인 경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 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 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 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 할 것

>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라목 및 제2호가목 •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라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라목 및 제4호나목 ·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 1. 제7조의4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호라목 또는 제4호다목의 요건 (외국인인 개인에게는 제4호다목을 준용한 요건을 말한다)만 적용한다. 다 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 2.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심사신청 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3. 이 표 제4호를 적용할 경우에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여서 이 표 제4 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 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 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

- 는 회사로 한정한다)가 이 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할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4. 이 표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을 말한다.
  - ②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사모투자 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같은 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6조의2제4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1]

## 대주주의 요건(제6조의2제5항 관련)

구 분	요 건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이 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이하 같다)인 경우

-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다.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 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 (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 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 채총액을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 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라. 그 금융기관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대상인 대부업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마.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 바. 상호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그 금융기관이 대부업자인 경우 에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 및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출 것을 포 함하다)
- 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 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 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

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 에 따라 허가 ·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 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 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 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 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내국법인(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한다. 이하 같다)인 경 우
- 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이 출 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는 기준을 충족할 것
  - 투자목적회사는 제외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 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다.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라.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서 개인인 경우
-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 가.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나.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따라 설립된 외국 법 라 한다)인 경우
- 4.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가. 인가 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는 업무를 경영하고 있을 것
  - 인(이하 "외국법인"이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이 출 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는 기준을 충족할 것
    -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 격 이상의 신용평가 등급을 받거나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

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마. 제1호바목 및 사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우

5. 대주주가 경영참여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 사모집합투자기구 또 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는 투자목적회사인 경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 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 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 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 할 것

-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나목・다목・바목 및 사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바목·사목 및 제2 호나목 ·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바목ㆍ사 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바목·사목, 제2호 나목(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4호 다목 ·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 1. 제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호사목 또는 제4 호라목의 요건(외국인인 개인에게는 제4호라목을 준용한 요건을 말한다)만 적 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 회사인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 2.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을 산정할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인가 신청 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3. 이 표 제4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여서 이 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 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가 이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할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이 표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을 말한다.

별표1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1의2]

## 건전한 경영을 위한 요건(제6조의3제5항 관련)

구분	요건
1.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경우	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
	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
	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
	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
	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
	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
	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
	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
	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
	에 따라 부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 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 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 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 이하일 것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 서 개인인 경우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가. 법 제50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것나.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	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을 것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대주주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 는 투자목적회사인 경 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제2호다목(금 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4호나목·다목 의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1. 위 표의 제4호를 적용할 때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 그 지주 회사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때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 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 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정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일 현재 국내 또는 외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업을 하고 있을 것

나. 지정회사가 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 2. 위 표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나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 합투자기구"로 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1657호, 2009.7.30.> 제2조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⑤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막한다. 이하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24조의6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같은 항 제7호 및 같은 항 제2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제5조 관련)

구 분	요 건
1. 한도초과보유주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
주가 「금융위원	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회의 설치 등에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
관한 법률」 제38	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약정한 날짜까지 채무를 변
조에 따라 금융감	제하지 않은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가 아닐 것
독원으로부터 검	다. 승인신청하는 내용이 법 제35조의2제1항에 적합할 것
사를 받는 기관(제	라. 승인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따라 은행의 지배주주로서
2호, 제3호 및 제7	적합하고 그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화에 기여
호에 해당하는 내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국법인은 제외한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당 위반 등의 정도가
다)인 경우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
	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
	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최대주
	주·주요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로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
	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이 영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가.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자본시
수가 '자본시장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

과 른 투자회사·투자 유한회사·투자합자 회사 및 투자조합 인 경우

금융투자업에 투자업자를 말한다)에 자산운용을 위탁하지 않을 것 관한 법률 에 따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주가 기금등인 경 우
- 3. 한도초과보유주|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인 경우
- 4. 한도초과보유주|가.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 주가 제1호, 제2 을 자본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 호. 제3호 및 제7 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호 외의 내국법이나.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
  - (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비금융회사로 한정한다) 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는 기준을 충족할 것
  - 다. 주식취득 자금이 해당 법인이 최근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보유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등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의 자금일 것 라.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주가 내국인으로 아닐 것
- 한도초과보유주|가, 주식취득 자금이 제1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 서 개인인 경우 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주가 외국인인 경 우
- 6. 한도초과보유주 가. 외국에서 은행업,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업을 경 영하는 회사(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이거나 해당 외 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일 것
  - 나.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 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 다. 해당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이 있을 것
  - 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 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

할 것

마.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등인 경우

한도초과보유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 주가 경영참여형 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경영참여형 사모 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 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 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 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가. 제1호의 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나. 제2호의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 합인 경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다. 제3호의 기금등인 경우: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라. 제4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마. 제5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5호의 요건을 충 족할 것
- 바. 제6호의 외국인인 경우: 제4호가목(외국금융회사는 제 외한다)·다목(외국금융회사는 제외한다)·라목 및 제6호나 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 1.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를 판정할 때에는 해당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 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 2. 자본총액을 산정할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자본총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 3.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금융회사 전체의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기업집단 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 기 업집단인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에 의하여 산정한 부채비율을 말한다.
- 4. 이 표 제6호를 적용하는 경우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외국인이 지주회사여서 이 표 제6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 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 신청할 때 지정하는 회사(그 지 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 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가 이 표 제6호 각 목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하면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5. 이 표 제7호를 적용하는 경우 이 표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조의4제1항에도 불구

하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비금융주력자
- 나.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의 합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무한책임사원 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다만, 서로 다른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 사이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
- 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이하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5제2항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0조의17제4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 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절에서 "사모투자 전문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 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이 절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한다.

제100조의18제1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0조의20제2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나목을 아래와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라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⑨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에 126호를 삭제한다.

⑩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 <별지1>

[별표 1] <u>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u>(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

(단위: 억원)

			( ﺋــٰ'	위: 억원)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최저자기 자본
1-1-1	투자매매업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0
1-1-2	투자매매업	증권	전문투자자	250
1-11-1	투자매매업	채무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0
1-11-2	투자매매업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100
1-111-1	투자매매업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 수채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75
1-111-2	투자매매업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 수채증권	전문투자자	37.5
1-12-1	투자매매업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50
1-12-2	투자매매업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125
1-13-1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1-13-2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25
11-1-1	투자매매업(인수 업은 제외한다)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0
11-1-2	투자매매업(인수 업은 제외한다)	증권	전문투자자	100
11-11-1	투자매매업(인수 업은 제외한다)	채무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80
11-11-2	투자매매업(인수 업은 제외한다)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40
11-111-1	투자매매업(인수 업은 제외한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 수채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30
11-111-2	투자매매업(인수 업은 제외한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 수채증권	전문투자자	15
11-112-1	투자매매업(인수 업은 제외한다)	사채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0
11-112-2	투자매매업(인수 업은 제외한다)	사채권	전문투자자	20
11-12-1	투자매매업(인수 업은 제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11-12-2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		50

11-13-1	투자매매업(인수 업은 제외한다)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11-13-2	투자매매업(인수 업은 제외한다)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10
11r-1r-1	투자매매업(인수 업은 제외한다)	제1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
12-112-1	투자매매업(인수 업만 해당한다)	사채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
12-112-2	투자매매업(인수 업만 해당한다)	사채권	전문투자자	30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1-2-2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전문투자자	50
1-21-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1-21-2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5
1-3-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900
1-3-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전문투자자	450
1-31-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450
1-31-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25
1-32-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50
1-32-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25
1-321-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통화·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80
1-321-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통화·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90
1a-1-2	투자매매업	법 제8조의2제5항 및 이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매매 체결대상상품		300
2-1-1	투자중개업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30
2-1-2	투자중개업	증권	전문투자자	15
2r-1-2	투자중개업	증권	전문투자자	5
2-11-1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1-2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5
2-12-1	투자중개업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2-2	투자중개업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5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3-2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5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2-2-2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전문투자자	10
2-21-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21-2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5
2-3-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2-3-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전문투자자	50
2-31-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	일반투자자 및	50
2 31 1	十八百川日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50
2-31-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5
2-32-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2-32-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25
2-321-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통화·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2-321-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통화·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10
2a-1-2	투자중개업	법 제8조의2제5항 및 이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매매 체결대상상품	전문투자자	200
2i-11-2i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30
3-1-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 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80
3-11-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1호·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0
3-12-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집 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3-13-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집 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4-1-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 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50
4-1-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 탁재산	전문투자자	125
4-11-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30
4-11-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	전문투자자	65
4-12-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 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20
4-12-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 탁재산	전문투자자	60
4-121-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 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4-121-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 탁재산	전문투자자	50

#### <비고>

- 1. 제7조제1항의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은 1-1-1 또는 1-1-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1-3-1 또는 1-3-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2. 1-11-1, 1-11-2, 1-111-1, 1-111-2, 1-12-1, 1-12-2, 1-13-1, 1-13-2, 11-11-1, 11-11-2, 11-111-1, 11-111-2, 11-112-1, 11-112-2, 11-12-1, 11-12-2, 11-13-1, 11-13-2, 12-112-1, 12-112-2, 2-11-1, 2-11-2, 2-12-1, 2-12-2, 2-13-1, 2-13-2 및 2i-11-2i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 3. 11r-1r-1은 제181조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만 해당한다.
- 4. 2r-1-2는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전문투자자는 제7조 제3항제3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5. 1a-1-2 및 2a-1-2는 법 제78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 6. 2i-11-2i는 제179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하며, 전문투자자는 같은 조 제1항제1 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7. 2-1-1, 2-1-2, 2-12-1 및 2-12-2는 법 제78조에 따른 업무는 제외하며, 2-1-1, 2-1-2, 2-11-1 및 2-11-2는 이 영 제179조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 8. 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경

- 우에는 11-13-1 및 11-13-2의 최저자기자본은 해당 최저자기자본의 2분의 1로 한다.
- 9. 법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적용할 때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이에 준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10. 삭제
- 11. 삭제
- 12.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일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 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13. 1a-1-2 및 2a-1-2의 투자자의 유형은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자간매매 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 <별지2>

## [별표 2]

# 대주주의 요건(제16조제6항 관련)

구 분	요 건
1. 대주주가 「금융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
위원회의 설치 등	총액을 뺀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려는
에 관한 법률」 제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
38조에 따른 검사	준을 충족할 것
대상기관(경영참여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형 사모집합투자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구는 제외하며, 이	다.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하 "금융기관"이라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다)인 경우	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
	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차입
	하여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
	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
	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
	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
	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
	친 사실이 없을 것

-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 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 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 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 립경영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 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 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2. 대주주가 제1호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 외의 내국법인(경 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 영참여형 사모집합 족할 것

투자기구와 투자목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적회사는 제외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이하 같다)인 다. 그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 경우 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3. 대주주가 내국인 가. 법 제24조에 적합할 것 으로서 개인인 경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우
- 4. 대주주가 외국 가. 인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인가 받으려는 금융투자업에 법령에 따라 설립 상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을 것
  된 외국 법인(이하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 "외국법인"이라 한 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다)인 경우 족할 것

-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 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적회사인 경우
- 5. 대주주가 경영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 여형 사모집합투자 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사모집 기구 또는 투자목 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 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 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 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사 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나목ㆍ다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2호나목・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3 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제2호나목(외국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제4호다목 · 라목의 요건을 충 족할 것

#### <비고>

- 1. 제16조제7항 각 호의 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마목의 대주주의 요건만 적용하고,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마목 및 제4호라목의 대주주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 2.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 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3. 제4호를 적용할 때 대주주인 외국 법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가 제4호 각 목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별지3>

### [별표 3]

등록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 및 제271조의2 관련)

### 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단위: 억원)

등록업무	금융투자업의	금융투자상품의	ㅁ기ㅇ처	최저자기
단위	종류	범위	모집유형	자본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	법 제229조제4호에	)] <del>[</del> ]	20
	업	따른 집합투자기구	사모	20

#### <비고>

- 1. 법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249조의3제2항제2 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적용할 때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이에 준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2.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일 이후 등록신청일까지의 자본금 증감본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3. 3-14-1의 투자자 유형은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만 해당한다.

## 나.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단위: 억원)

등록업무	금융투자업의 종	트기리사기사이 베이	투자자의 유	최저자기자
단위	류	투자대상자산의 범위	형	본
5-1-1	투자자문업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 외파생상품 및 제6조의 2 각 호에 따른 투자대 상자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 자	8
5-1-2	투자자문업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 외파생상품 및 제6조의 2 각 호에 따른 투자대 상자산	전문투자자	4
5-2-1	투자자문업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	일반투자자	5

		외파생상품 및 제6조의 2제3호에 따른 투자대 상자산	및 전문투자 자	
5-2-2	투자자문업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 외파생상품 및 제6조의 2제3호에 따른 투자대 상자산	전문투자자	2.5
5-3-1	투자자문업	제6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 자	3
5-3-2	투자자문업	제6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전문투자자	1.5
6-1-1	투자일임업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 외파생상품 및 제6조의 2 각 호에 따른 투자대 상자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 자	27
6-1-2	투자일임업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 외파생상품 및 제6조의 2 각 호에 따른 투자대 상자산	전문투자자	13.5
6-2-1	투자일임업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 외파생상품 및 제6조의 2제3호에 따른 투자대 상자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 자	15
6-2-2	투자일임업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 외파생상품 및 제6조의 2제3호에 따른 투자대 상자산	전문투자자	7.5
6-3-1	투자일임업	제6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 자	12
6-3-2	투자일임업	제6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전문투자자	6

<비고>

1. 법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적용할 때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이에 준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2.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일 이후 등록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3. 5-3-1 및 5-3-2는 투자자문업자(5-2-1 또는 5-2-2의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및 투자일임업자(6-2-1 또는 6-2-2의 투자일임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가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4. 6-3-1 및 6-3-2는 투자일임업자(6-2-1 또는 6-2-2의 투자일임업 등록을 한자를 말한다)가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별지4>

## [별표 4]

## 대주주의 변경승인요건(제26조제1항 관련)

구 분	요 건
1. 대주주가 금융기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관인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그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
	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
	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
	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
	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
	경영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
	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
	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네크시크 에겐 作크의 畝豆 久

- 외의 경우
- 2. 대주주가 제1호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내국법인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나, 그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 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 이하일 것
  -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3. 대주주가 내국인가. 법 제24조에 적합할 것 으로서 개인인 경나.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 외국 가. 승인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주식취득대상 금융투자업자가 경영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을 것
    -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 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목적회사인 경우

5. 대주주가 경영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 여형 사모집합투 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사모집 자기구 또는 투자 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 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 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 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사

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2호가목·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3 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4호나목·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비고>

- 1. 제1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다목의 대주주의 요건만 적용하고,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다목 및 제4호다목의 대주주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 2. 제4호를 적용할 때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 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 다)가 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전부나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별지5>

#### [별표 22]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	七/一百年七	금액
가.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449조	600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2항제1호	
나. 법 제25조제1항(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449조	5,000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사	제1항제1호	
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25조제2항 전단(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49조	5,000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	제1항제2호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라. 법 제25조제2항 후단(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49조	5,000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외이사가 총 위	제1항제3호	
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마. 법 제25조제4항(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449조	5,000
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	제1항제4호	
은 경우		
바. 법 제25조제6항(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449조 제1	5,000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외이사를 두지 않은	항제5호	
경우		
사. 법 제26조제1항(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449조 제1	5,000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항제6호	
않은 경우		
아. 법 제26조제2항(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449조 제1	5,000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항제7호	
을 모두 충족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		

<u> </u>		
 자. 법 제26조제4항(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449조 제1	5,000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감사	항제8호	,
위원회 구성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차. 법 제28조제1항(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449조 제1	5,000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	항제9호	
지 않은 경우		
카. 법 제28조제2항(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449조 제1	5,000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않은	항제10호	
경우		
타. 법 제28조제3항(법 제335조의8제5항 및 제350	법 제449조 제1	1,000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제11호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준법감시인을 임면		
한 경우		
파. 법 제28조제5항(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449조 제1	500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항제12호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		
한 경우	22 2440 - 24	<b>-</b>
하. 법 제28조제5항(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449조 제1	5,000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항제12호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		
하게 한 경우	H - 기 440 フ - 기 1	1,000
거. 법 제33조제1항(법 제335조의14, 제350조, 제	법 제449조 제1	1,000
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항제13호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		
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너. 법 제33조제2항(법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법 제449조 제1	1,000
		1,000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항제14호	
하여 공시서류를 비치 또는 공시하지 않거나 거		
짓으로 작성하여 비치 또는 공시한 경우 더. 법 제33조제3항(법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법 제449조 제1	500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항제15호	300
	용제12조	
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러. 법 제33조제4항(법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법 제449조 제1	1,000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항제15호의2	1,000
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	0.110.1.712	
여 제출한 경우		
의 세월인 정도		

	11 1 1 10 7 11 1	<b>5</b> 000
머.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법 제449조 제1	5,000
거치지 않은 경우	항제16호	<b>5</b> 000
버. 법 제34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법 제449조 제1	5,000
또는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항제17호	
공시한 경우	22 2440 - 24	0.000
서. 법인인 자가 법 제34조제6항 또는 제36조(법 제	법 제449조 제1	3,000
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	항제18호	
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21 2440 - 214	1.500
어.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34조제6항 또는 제36조	법 제449조 제1	1,500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	항제18호	
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및 기440 - 기1	0.000
저. 법 제40조 후단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449조 제1	3,000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항제19호 법 제449조 제1	E 000
처. 법인인 자가 법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		5,000
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	항제20호	
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법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		
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		
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		
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커.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법 제449조 제1	2,500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	항제20호	
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		
조제1항(법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		
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		
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		
사·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		
수		
 터. 법 제47조제2항(법 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49조 제1	1,500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항제21호	2,000
경우	0 / 11/21-21-	
퍼. 법 제49조(법 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449조 제1	2,500
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호부터 제	항제22호	, -
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	3 ,,22	
O도기기기 1— 의기가 에이어도 경기된 한 경		

수		
허.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투자권유준칙 또는 법	법 제449조 제1	5,000
제52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지	항제23호	
않은 경우		
고. 법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않거나	법 제449조	600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제2항제2호	
노. 법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법 제449조	300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투자자에게	제2항제3호	
알리지 않은 경우 또는 표지를 게시하지 않거나		
증표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		
도.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법 제449조 제1	3,000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	항제24호	
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6조제1항	법 제449조 제1	3,000
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항제25호	200
모.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법 제449조	600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보. 법 제57조제6항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제2항제4호 법 제449조	2 000
		3,000
투자광고를 한 경우 소.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계약서	제1항제25호의2 법 제449조	3,000
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26호	0,000
오.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법 제449조	3,000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27호	,
조. 법 제63조제1항(법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법 제449조	250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	제1항제28호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		
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초.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	법 제449조	3,000
여 각 해당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28호의2	
코. 법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	법 제449조	5,000
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	제1항제29호	
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토. 법 제73조를 위반하여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	법 제449조	600
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제2항제5호	
포. 법 제7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	법 제449조	5,000
여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받은 경우	제1항제30호	1 000
호. 법 제7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	법 제449조	1,000
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30호의2	

구. 법 제86조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법 제449조	3,000
	제1항제31호	2,000
누. 법 제87조제7항(법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49조	1,000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유지하지 않	제1항제32호	·
은 경우	, -	
두. 법 제87조제8항(법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49조	1,000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2조제7항을 위반하	제1항제33호	
여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루. 법 제90조제1항(법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49조	1,000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법 제186조제2항에	제1항제34호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영업		
보고서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		
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무. 법 제98조의2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경	법 제449조	3,000
Ŷ	제1항제34호의2	
부. 법인인 자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법 제449조	500
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경우	제2항제6호	
수.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	법 제449조	250
고를 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경우	제2항제6호	
우. 법 제114조제1항 또는 제240조제1항을 위반하	법 제449조	3,000
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	제1항제35호	200
주. 법인인 자가 법 제128조 또는 제143조를 위반	법 제449조	600
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제2항제7호	
하여 제출한 경우	H] 7] 440 7	200
추.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28조 또는 제143조를	법 제449조	300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	제2항제7호	
성하여 제출한 경우 쿠. 법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H	5,000
구. 합 제150호에 따른 조치를 하시 않는 경구	법 제449조	5,000
투. 법인인 자가 법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항제36호 법 제449조	1,000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또는	제2항제8호	1,000
	7112 8 7110 P	
제419조제5항(법 제43조제1항 후단, 제53조제1항		
후단,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		
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		
조, 제334조,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		
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		

구에 불응한 경우		
푸.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	법 제449조	500
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2항제8호	
또는 제419조제5항(법 제43조제1항 후단, 제53조		
제1항 후단,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		
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		
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		
출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경우		
후. 법인인 자가 법 제135조, 제136조제6항, 제139	법 제449조	3,000
조제3항 또는 제148조를 위반하여 신고서 또는	제1항제37호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35조, 제136조제6항,	법 제449조	1,500
제139조제3항 또는 제148조를 위반하여 신고서	제1항제37호	
또는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경우		
느. 법인인 자가 법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법 제449조	3,000
제13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 사본이나 법 제	제1항제38호	
148조에 따른 보고서 사본에 신고서 또는 보고		
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경우		
드.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35조, 제136조제6항	법 제449조	1,500
또는 제13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 사본이나 법	제1항제38호	
제148조에 따른 보고서 사본에 신고서 또는 보		
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경우	3 440 =	1.000
르. 법 제15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인이 아닌	법 제449조	1,000
의결권권유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므. 법인인 자가 법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제2항제8호의2	200
	법 제449조	200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2항제8호의3 법 제449조	100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2항제8호의3	100
스. 법인인 자가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법 제449조	3,000
대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제1항제39호	ĺ
한 경우		
으.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	법 제449조	1,500
증권에 대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제1항제39호	

수탁을 한 경우		
	법 제449조	1,000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제1항제40호	,
경우		
츠. 법 제1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법 제449조	5,000
경우	제1항제41호	
크. 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법 제449조	5,000
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41호의2	
<u>트.</u> 법 제190조제7항(법 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	법 제449조	600
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	제2항제9호	
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위반하여 연기수익자총회 등을 소집하		
지 않은 경우		
프. 법 제249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	법 제449조	1,000
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1항제41호의3	
흐. 법 제249조의14제7항을 위반하여 행위준칙을	법 제449조	1,000
제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제2항제10호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u>기.</u> 법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	법 제449조	3,000
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을 두지 않거나 임직원에	제1항제42호	
게 겸직하게 한 경우		
<u>니.</u> 법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	법 제449조	3,000
제2항을 위반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지	제1항제43호	
않은 경우		
<u>디.</u> 법 제284조, 제295조, 제323조의8, 제325조, 제335	법 제449조	5,000
조의7 또는 제379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경	제1항제44호	
우		
리. 법 제3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않은 경	법 제449조	1,000
	제2항제11호	1 000
<u>미</u> . 법 제3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등을 구분하	법 제449조	1,000
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12호	1,000
<u>비.</u> 법 제314조제6항, 제3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법 제449조	1,000
또는 제319조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나 통	제2항제14호	
보를 하지 않은 경우 시. 법 제316조제1항 또는 제319조제5항을 위반하	법 제449조	600
여 실질주주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를 작성·비	제2항제15호	000
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개건 중 /개10곳.	
시의의 당시되 시겠 <del>으</del> 도 극중된 경투		

이. 법 제3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	법 제449조	200
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제2항제16호	
지. 법 제33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내부통	법 제449조	5,000
제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44호의2	
<u>치.</u> 법 제33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법 제449조 3,000	
두지 않은 경우	제1항제44호의3	
<u>키.</u> 법 제3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	법 제449조	500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제1항제44호의4	
를 담당한 경우	22 21 4 4 0 =	<b>5</b> 000
티. 법 제3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	법 제449조	5,000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제1항제44호의4	
를 담당하게 한 경우	2 2	
피. 법 제33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449조	3,000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또는 신용	제1항제44호의5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u>히.</u> 법 제339조제2항(법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	법 제449조	600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항제17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신		
고를 하지 않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u>갸.</u> 법 제3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법 제449조	5,000
거치지 않은 경우	제1항제45호	
<u>냐.</u> 법 제34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법 제449조	5,000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제1항제46호	
경우	3 440	
<u>댜.</u> 법인인 자가 법 제343조제8항에 따른 자료의	법 제449조	3,000
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47호	1.500
<u>랴.</u>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343조제8항에 따른 자	법 제449조	1,500
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47호	100
<u>마.</u> 법 제348조(법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	법 제449조	100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제2항제18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경우 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70조제1	법 제449조	5,000
		5,000
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샤. 법인인 자가 법 제416조 단서(법 제335조의14	제1항제48호 법 제449조	600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	제2항제18호의2	000
	제4성제10모터4 	
령을 위반한 경우 야.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416조 단서(법 제335조	법 제449조	300
<u> </u>	日 /川 <del>石コジン。</del>	500

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	제2항제18호의2	
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u>쟈.</u> 법 제418조(법 제335조의14 및 제350조에서 준	법 제449조	600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	제2항제19호	
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u>챠.</u> 법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	법 제449조	5,000
리한 대우를 한 경우	제1항제49호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	제6조의2(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	
자산) 법 제6조제6항에서 "대	자산)	
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		
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지분 또는 권리	
	(이하 "사업수익권"이라 한다)	
	<u>가.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u>	
	·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익	
	명조합의 출자지분	
	나.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다. 그 밖에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u>권리</u>	
제6조의3(전담중개업무의 범위	제6조의3(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9항 각 호	등) ①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		
를 말한다.		

1. ~ 2. (생략)

- 3.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 2제1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 ② (생략)
- ③ 법 제6조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1.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6조제9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투자자재산(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으로서전담중개업무의 대상이 되는투자자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주문의 집행업무

2. ~ 6. (생 략) <신 설>

<u>1.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u>
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u>구</u>
$\underline{2}$ . $\sim$ $\underline{3}$ . (현행 제 $1$ 호·제 $2$ 호와
같음)
<u>4</u>
<u>법 제9</u>
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
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② (현행과 같음)
③
1.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
<u>구등</u>
<u>전문투자형</u>
사모집합투자기구등
2. ~ 6. (현행과 같음)
7.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저
① ~ ③ (생 략)
④ 법 제7조제6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인 경우를 말한다.
1. ~ 10. (생 략)
⑤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금융투자
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u>신</u> 설>

3. 법 제7조제6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업 가. ~ 바. (생 략)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7조제6항제4호
1. ~ 10. (현행과 같음)
⑤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7조제6항제3호의 경우
: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4. 법 제7조제6항제4호
가. ~ 바. (현행과 같음)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
한 등) ①
1. (현행과 같음)
2

구에 대한 초기 투자업무

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마. (생 략)
바. 해외 집합투자기구를 설립
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100분
의 3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
의 확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
는 경우

사. (생략)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 ④ (생 략)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 1. (생략)
- 2.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따른

가. ~ 마. (현행과 같음) <삭 제>

사. (생략)

-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계열회사를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가 설립·운용하는 투자회사등(법 제182조제1항의투자회사등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 ③ ④ (현행과 같음)

세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
위)		
1. (현행과 길	들음)	

2.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 마. (생 략) 바. 신탁업인 경우에는 제47조 제1항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의 업무, 다만, 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 또는 외 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신탁재 산의 보관·관리업무(외화자산 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 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한 다). 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원화자산인 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 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 사분석업무, 신탁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의 단순매매주문업무 및 전담 중개업무로 제공하는 전문사모 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 의 보관·관리업무는 제외한다.

가. ~ 마. (생 략)
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u> 투자기구등</u>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저 의 차단) 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정보교류 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 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고유재산운용업무(누구의 명 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 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업 무로서 투자매매업이나 제68조 제2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가 아닌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투자매매업 • 투 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집합투 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 하는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신탁업(신탁재 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 및 집합투자재산・신탁재

산 중 금융투자상품을 보관・

관리하는 업무만 해당한다. 이

·
데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의 차단) ①
1

하 이 조에서 같다) 간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고유재산운용업무·투자매매 나. -----업·투자중개업 중 전담중개업 무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의 투자자재산을 전담중개업무 투자기구등 -----로서 보관·관리하는 신탁업 간 의 경우 다. (현행과 같음) 다. (생략) 2.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 용업무 · 금융투자업 간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가. 기업금융업무와 다음 각각 의 업무 간의 경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고유재산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업무 5) (생략) 6) (현행 5)와 같음)

제51조(계열회사 등과의 정보 교류의 차단) ① (생 략)

- ② 법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를 말한다.
- 1. (생 략)
- 2. 법 제4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목부터 차목까지의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경우만 해당한다.

가. ~ 마. (생 략)

바.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그 집합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법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투자한 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에 부합되는회사에 한한다)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그 임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

제51조(계열회사 등과의 정보
교류의 차단) ① (현행과 같음)
②
<u>.</u>
1. (현행과 같음)
2
최초 겸직 또는 파견일이 속하
는 분기의 말일까지 금융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 마. (현행과 같음)
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
자기구(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u>기구경영참여형 사</u>
모집합투자기구

사. ~ 차. (생 략) 사. ~ 차.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1조제3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 4의4. (생 략) 1. ~ 4의4. (현행과 같음) 5.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 5.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용업무 구 집합투자재산-----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9조(신용공여) ① (현행과 같음) 제69조(신용공여)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매 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전담 중개업무를 제공받는 전문사모 ----- 전문투자 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신용 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공여할 수 있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전담중개업무로서 보관·관리 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 의 투자자재산인 증권을 담보 로 금전을 융자하는 방법

제77조의4(전담중개업무에 관한 계약 등) <u><신 설></u>

① 법제77조의3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법제6조제9항제3호의업무를 위탁받은 자및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법제184조제6항제2호의업무를 위탁받은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u>②</u> ~ <u>③</u> (생 략)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 ① (생 략)
- ② 법 제77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받은 담보를 활용하여 제삼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신용공여를 하

제77조의4(전담중개업무에 관한
계약 등) ①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전단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u>②</u>
<u>후</u> 단
<u>전문</u>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
$\underline{3}\sim\underline{4}$ (현행 제2항·제3항과 같음)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
<u>전문투자형 사</u>
모집합투자기구등

는 경우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 외 등) ① 법 제81조제1항 각 외 등) ①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 에 각 집합투자기구[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경우에는 법 제229 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 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 기구"라 한다), 아목부터 카목 까지의 경우에는 법 제229조제 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 기구(이하 "특별자산집합투자 기구"라 한다)로서 그 집합투 자규약에 해당 내용을 정한 경 우만 해당한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 위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카. 사업수익권 해당하는 출자지분 또는 권리

- (이하 "사업수익권"이라 한다)
- 1)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합자조합 · 익명조합의 출자지분
- 2)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 3) 그 밖에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
- ② ~ ⑤ (생 략)
- ⑥ 법 제81조제1항제1호마목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의 100분의 100을 말한다. 다 만,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 우에는 이를 100분의 400으로 한다.
- ⑦ ~ ⑨ (생 략)
- <신 설>

① (생략)

제86조(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 제86조(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

② ~ ⑤ (현행과 같	음)
--------------	----

서 삭제>

- ⑦ ~ ⑨ (현행과 같음)
- ① 법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이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0분의 5를 말한다.
- ① (현행 제10항과 같음)

한 등) ① 법 제8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 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 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 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 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금액 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 액의 100분의 10과 집합투자업 자가 운용하는 각 집합투자기 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다 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 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제80조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산정 한 시가총액비중을 말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의 합이 집 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 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한 능) ①
1
<u>100분의 5와</u>
<u>100분의 5와</u>
<u>100분의 25</u> .

⑤ (생략)

다.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7 등) ① ~ ⑥ (생 략)

는 각 계열회사별 주식의 비중

을 초과하는 계열회사의 주식

에 대하여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

① 금융위원회는 사모집합투자 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u>100분의 5를</u>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b>4</b>
<u>100분의 5를</u>
100분의 5
<u> 100년의 3</u> 를
<u></u>
⑤ (현행과 같음)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u>⑧</u> 제1항부터 <u>제7항</u> 까지에서	<u>⑦</u> <u>제6항</u> 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신청	
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한다.	
세227조(정관 기재사항 등)	제227조(정관 기재사항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4조제5항에서 "대통	<u>&lt; 삭 제 &gt;</u>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	
억원을 말한다.	
세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
법) ①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	법) ①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	
장을 포함한다)에서 공표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	
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u>사모투자전문회사가 법 제27</u>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u>구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u>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	호 또는 제2호
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취득가	
겨	

#### 2. ~ 3. (생략)

②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 액"이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사모투자전문회사 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을 말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 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 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 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 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 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 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생략)

제267조(순자산액 미달사실의 보고방법) ① 투자회사는 법 제243조제1항에 따라 그 순자산액이 법 제19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게된 경우에는 그 원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2. ~ 3. (현행과 같음)
②
<u>경영참여형 사모</u>
집합투자기구
③ (현행과 같음)
<u>&lt; 삭 제 &gt;</u>

-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 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한다.

제268조(증권의 예탁 등)

- ① ~ ③ (생 략)
- ④ 법 제24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집 합투자재산 중 금융기관에 예 치한 총금액 또는 단기대출한 총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1. ~ 4. (생 략)
- 5.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자 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과 | 전담중개업무로서 하는 거래 기구등------6. (생략)
- 한 특례

<신 설>

< 삭 제 >

제268조(증권의 예탁 등)

① ~ ③ (현행과 같·	음)
---------------	----

4
1 ~ 4 (혀해과 같음)

-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
- 6. (현행과 같음)

5. ----

-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 한 특례
  - 제1절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 기구

한 특례) ① 법 제249조제1항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법 제81조제1항 단서(제80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법 제 81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 · 제3호(가목 및 나목 은 제외한다) 및 제4호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49조제3항에서 "대통 |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른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공직자윤리 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 을 체결할 목적으로 설정된 투 자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38조제1항에서 정한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으로 납부할 것

③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제80조 제6항을 적용할 때 "100분의 <u>100"은 "100분의 4</u>00"으로 하 고, 법 제81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할 때 "100분의 20"은

제271조(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 제271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 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 249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법 제9 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 ② 법 제249조의2제2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을 말한다.

> 1.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전문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순 자산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 하지 않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1억원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전 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3 억원

< 삭 제 >

"100분의 50"으로 한다.

①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는 제97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⑤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 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 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49조제6항에 따라 사모집합 투자기구별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 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1. 주된 운용전략 및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 2. 파생상품의 매매 현황
- 3. 투자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 한 사항

제271조의2(전문사모집합투자기 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 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적격투자자"란 다음 각 호 의 자를 말한다.

- 1. 국가 및 외국 정부
- 2.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

   기관

< 삭 제 >

< 삭 제 >

제271조의2 (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249조의3제2항제1호가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 한다.

-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 및 이에 준하는 외 국인
- 4.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국제기구
- 5.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5

   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 6. 위험관리 능력 등을 감안하 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전문투자자
- ② 법 제249조의2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란 100분의 400을 말한다.

- ③ 법 제249조의2제4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 ① 법 제249조의2제6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 른 한국수출입은행
-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 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 ② 법 제249조의3제2항제1호나 목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 (이하 "외국 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별표2 제4호가목·라목 및 마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같은 표 같은 호 가목 중 "인가"는 "등록"으 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 려는"으로 본다.
- ③ 법 제249조의3제2항제2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별표 3 가.와 같다.
- ④ 법 제249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사항을 말한다.

1. 제2항, 제3항 및 제80조제6 항 단서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 신탁업자 및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 3.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4. 기준가격 산정오류 및 그 변 경이 있는 경우(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이 있는 경우

6. 주된 투자운용전략이 변경된경우

⑤ 법 제249조의2제6항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 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 또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이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법 제286조제1 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 인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근 임직원으로 3인 이상 갖 출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u>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수</u> 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 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 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⑤ 대주주(법 제249조의3제2항 제5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요건을

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1. 제4항제1호의 경우: 제2항,

   제3항 및 제80조제6항 단서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사유와 처리방안
- 2. 제4항제4호의 경우: 기준가

   격 산정오류의 발생원인 및 그

   변경내용
- 3. 제4항제5호의 경우: 환매연

   기 또는 환매재개의 사유

- ⑥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9조의 2제7항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가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1. 금전차입 및 파생상품 매매

   현황
- 3.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
   황
- 3. 주된 운용전략 및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 4. 투자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 대주주가 별표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갖출 것.
- 2. 대주주가 별표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4호가목·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에 같은 표 같은 호 가목 중 "인가"는 "등록"으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 "으로 본다.
- ⑥ 법 제249조의3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한 사항

<신 설>

<신 설>

- ①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 (이하 이 절에서 "이해상충방지 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 2. 법 제4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

   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 ⑧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항에서 "지점등"이라 한다)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등 전부를 하나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본다.이 경우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u>따라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u>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3 (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법 제249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9조의3제2항제2호의 경우: 해당 등록업무 단위 최 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 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 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 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 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 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다 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49조의3제2항제5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른 요건을 유지할 것 가.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 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 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

및 3)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 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 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 로 본다. 나.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 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 ・3) 및 제4호라목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 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 의 벌금형"으로 하고, 제4호라 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 주가 최근 3년간"으로.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 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 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본 국의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 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로 본 다. 다. 법 제249조의3제2항제5호 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 호 나목의 요건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에 "최대주주"는 각각 "외국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제271조의4(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9조의3제3항에 따 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 소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경영하려는 등록업무 단위 (법 제249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업무 단위를 말한다. 이하

- 같다)에 관한 사항
-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 항
-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7. 대주주나 외국 집합투자업 자에 관한 사항
-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 항
- 9.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 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하 여야 한다.
-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 한다)
- 2.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 3.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 서
- 4.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 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 6. 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등록신청일(등록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등록신청이나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등록신청 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신 설>

<신 설>

<u>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u> 기재한 서류

8. 대주주나 외국 집합투자업자 가 법 제249조의3제2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49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9조의3제4항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을 한 날부터 6개

<신 설>

<신 설>

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기 한을 따로 정하거나 전문사모집 합투자업등록을 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는 그 기한 이내에 그 등록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5(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법 제 249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 249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투 자자를 말한다.

제271조의6(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① 법 제249조의5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법 제249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자 중광고하는 날의 금융투자상품(법 제74조에 따른 투자자역탁금을 포함한다) 잔액이 1

<신 설>

억원 이상인 투자자를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5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 체"란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 송, 우편, 전자우편(이와 유사 한 전자통신을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271조의7(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요건) 법 제249조의6제1항제4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회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 기구 중 법 제279조제2항 후단 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 자기구의 경우에는 가목의 요 건으로 한정한다. 가. 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감독이사는 법 제24조에 적 합할 것

나. 설정·설립 당시의 자본금 이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

<u>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u> <u>상일 것</u>

2.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설정·설립 당시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만, 법제279조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 중 법제27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271조의8(변경보고의 적용 제외) 법 제249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및 이 영의 개정이나 금 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보고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

제271조의9(보고의 방법 및 절차

<신 설>

등) ① 법 제249조의6제5항에 따른 보고서면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투자목적·투자방침 및 주된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3.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4.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과 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감독이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신탁업자에 관한 사항

7.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문투 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전담 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만 해 당한다)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신청서에 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 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 함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경우로 한정하며,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경우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를 포 함한다)의 사본(집합투자기구 보고를 위하여 이미 제출한 업 무위탁계약서와 다른 경우만 제출한다)

<u>가.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 및</u> <u>투자익명조합인 경우는 제외</u> 한다)

나. 신탁업자

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문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 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

	<u> </u>
<u>&lt;신 설&gt;</u>	③ 법 제249조의6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서면에는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규
	약, 등기부 등본, 주요계약서
	사본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249조의
	6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
	하고, 그 내용이 같은 조 제1
	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보고요
	건 및 변경보고요건을 충족하
	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의 신청
	과 검토, 보고서면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u>&lt;신 설&gt;</u>	제271조의10(전문투자형 사모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

<신 설>

- 용방법 등) ① 법 제249조의7제 1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 분의 400을 말한다.
- ② 법 제249조의7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 ③ 법 제249조의7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1년을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가 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구약에서 정하는 기간으로한다.
- ④ 법 제249조의7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란 전문투자형 사모집 합투자기구가 합병·해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 ⑤ 법 제249조의7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뚜렷하게 떨어져서 부동산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 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그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를 말한다.
- ⑥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법제249조의7제3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전차입 및 파생상품 매매현황
-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 ⑦ 제6항에 따라 보고의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2.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신 설>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매년 12월 31일
- ⑧ 법 제249조의7제4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말한다.
-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제93조제2항의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 3.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⑨ 법 제249조의7제4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 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 회사 등이 금융위원회에 보고 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른다.
- 제271조의11(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법제249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1. 다른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신 설>

<신 설>

받을 것. 다만, 「공직자윤리 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 을 체결할 목적으로 설정된 투 자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법
   제238조제1항에서
   정한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으로

   납부할
   것
- ② 법 제249조의8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6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법 제249조의8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u>1. 제68조제5항제10호의 행위</u>
- 2. 제68조제5항제13호의 행위
- 3. 제68조제5항제14호의 행위 중 집합투자증권 판매와 관련 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행위

제271조의12(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법제249조의9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신 설>

<신 설>

법령"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 의 법령을 말한다.

- ② 법 제249조의9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법 제249조의9제1항제6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 2. 법 제2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아니하거나, 업무정지의 기간중에 업무를 한 경우
- 3.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 <u>④</u> 법 제249조의9제2항제7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

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 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⑤ 법 제249조의9제3항 각 호 <신 설>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4항제3 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 한다. ⑥ 법 제249조의9제3항제2호에 <신 설>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란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 <신 설> 제271조의13(경영참여형 사모집 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① 법

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49조의10제4항 본문에 따른 보고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법 제249조의10제2항에 따 른 등기사항
-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 한 사항
-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야 한다.
- 1. 정관(법 제249조의10제1항제 4호, 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 다)
-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다음각 목의 서류
- 가.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나. 대주주의 성명·주민등록 번호(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 는 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 록번호) 및 소유주식수 등 대 주주의 내역

<신 설>

-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와 체결한 업 무위탁계약서
- 4.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③ 제1항에 따른 서면을 제출 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 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와 그 업무집행사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서면을 제출 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249조 의10제4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항에 따른 보고요건을 충 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⑤ 법 제249조의10제4항 단서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 제9조제1항에 따른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계열회사 가 출자한 지분의 합계가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전체 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 을 출자하는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 열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3.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 이 유한책임사원으로 경영참여 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전체지분 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출자한 경우 4.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 으로 출자하기로 약정한 지분의 합계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 자기구 전체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는 비율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

우 <신 설> ⑥ 법 제249조의10제6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49조의10제1항제3호 의 사항 2.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의 사항 3.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 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신 설> 구는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변 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었 던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금 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 각 호의 사항 중 제2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었던 연도의 다음 해의 1월 10일 까지 금융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관련 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 보고의 신청과 검토, 보고

서면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① 법 제269조제3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u>1. 제10조제1항 각</u>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 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신 설> ② 법 제249조의11제4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 사원의 업무"란 제271조의18제 3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 설> ③ 법 제249조의11제6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 자자"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④ 법 제249조의11제6항제2호 <신 설>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 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
   원 또는 운용인력: 1억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3억원
- 5 법 제249조의11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비율을 말한다.
- ⑥ 법 제249조의11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 2. 유한책임사원의 성명·주민등 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및 출자 금액
- 3. 제271조의18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절차
- 4.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금액 및 투자 구조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 합투자기구의 사원을 보호하기 위한 <u>것으로서</u> 금융위원회가

<신 설>

<신 설>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① 법 제249조의11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란 법 제249조의11제8항에 해
 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을 말한
 다.

⑧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경영참 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 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형 사 모집합투자기구 전체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방법으 로 출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 합투자기구가 해외 직접투자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 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 다)에 법 제249조의12에 따른 방법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말 한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설 립 목적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사원은 업무집행사원이 출 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 자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으로 출자할 수 있다.

<신 설>

①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원의 출자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15(경영참여형 사모집 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 용방법 등) ① 법 제249조의1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가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 합투자기구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지분증권, 신주인수권(그 밖 의 신규발행 지분증권을 인수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신 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 채권(이하 이 항에서 "지분증 권등"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지분증권등을 공동 또는 단 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지분증권등을 상호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u><신</u> 설>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 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②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 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 른 부동산투자회사 3.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 외국법인 및 그 종속회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종속회사에 상당 하는 외국회사를 말한다)가 소 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 중 다음 각 목의 자산을 합한 금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에 그 외국법인 가.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 나.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한 금전채권

다.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나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 별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권리의 행사 등으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회사와 유사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
- ③ 법 제249조의1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주권 관련 사채권(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이조 및 제271조의17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 1.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과 주권 관련 사 채권의 전환권·신주인수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취득할 수

- 있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금 용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정한 발 행주식을 말한다)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 는 투자
- 2. 투자계약 등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투자하는 투자
- ④ 법 제249조의1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을 말한다.
- 5 법 제249조의12제1항제7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 1. 투자대상기업의 금전채권에 대한 투자(법 제249조의12제1 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투자대상기업이 보유하는 부

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 · 임차권 · 분양권 등 부동산 관 련 권리를 포함한다) 또는 금전 채권 등에 대한 투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투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투자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비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5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비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 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 시설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5 조의3제1항에 따른 화경보전시 설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25

조의4제1항에 따른 의약품 품

5. 투자대상기업의 사업부분을

양수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회

질관리개선시설

	<u>사</u>
<u>&lt;신 설&gt;</u>	제271조의16(여유자금의 운용방
	법 등) ① 법 제249조의12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단기대출"이란 법 제83조제
	4항에 따른 단기대출을 말한다.
<u>&lt;신 설&gt;</u>	② 법 제249조의12제2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융회사"란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
	용회사 또는 「우체국 예금·보
	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
	관서와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
	회사를 말한다.
<u>&lt;신 설&gt;</u>	③ 법 제249조의12제2항제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u>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u>
<u>&lt;신 설&gt;</u>	<u>④ 법 제249조의12제2항제3호</u>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
	권"이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의 증권을 말한다.
<u>&lt;신 설&gt;</u>	⑤ 법 제249조의12제2항제4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

<신 설>

<신 설>

증서

2.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제271조의17(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개산의 운용제한 등)① 법 제249조의12제 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 ② 법 제249조의12제3항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 집합투자재산이 법 제249조 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 을 취득하기에 부족한 경우
- 2. 제271조의15제5항제4호의 시설 및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 우
- ③ 법 제249조의12제4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 권"이란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 <신 설> ④ 법 제249조의12제4항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이 정 지된 경우 2. 투자대상기업이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 우 ⑤ 법 제249조의12제5항 단서 <신 설>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⑥ 법 제249조의12제6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⑦ 법 제249조의12제6항 단서 <신 설>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 장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

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중단된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
	<u>+</u>
<신 설>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란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
	권의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
	을 받은 기간을 말한다.
<u>&lt;신 설&gt;</u>	<ul><li>⑨ 법 제249조의12제9항에 따</li></ul>
	른 보고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u>1.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u>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2.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매년 12월 31일
<u>&lt;신 설&gt;</u>	⑩ 제9항에 따른 보고는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
	식 및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u>한다.</u>
<u>&lt;신 설&gt;</u>	제271조의18(투자비율의 산정방
	<u>식 등) ① 법 제249조의12제1항</u>
	제1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u>투자비율은 각각 투자하는 날</u> 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법 제249조의12제2항제3호 및 제3항 본문의 투자비율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 한 법률에 따른 기금이 경영참 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이 되는 경우로서 제271조의14 제9항에 따라 출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자하기로 약 정하는 방식 외의 방법으로 출 자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방 법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1. 법 제249조의12제2항제3호 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는 경 우: 기금의 출자금 범위에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금액과 그 증권취득금액을 각각 제외하고 계산한다.

2. 법 제249조의12제3항 본문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에서 기금의출자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u><신</u>\_설>

구의 업무집행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대상기업 선정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또는 선정
2.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시기·방법등의 결정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 집합투자재산이나 투자목적 회사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로서 사원의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법 제249조의12제3항 단서, 제4항 단서, 제5항 단서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서식 및 절차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19(투자목적회사)①법제249조의13제1항제3호각

<신 설>

<u><신 설></u>

-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 ② 법 제249조의13제1항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를 한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으로서출자전환 등을 한 자
-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 <u>족하는 법인</u>
- 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법 제9조제1 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10에 따른 경영참여 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 하고,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 정 또는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 기구는 포함한다)가 아닐 것 나. 투자목적회사의 전체 지분 의 100분의 10 이상을 투자할

<u><신 설></u>

<신 설>

것

다. 법인의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전체 사원의 출자금액보다 크지 않을 것라.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③ 법 제249조의1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투자목적회사가 차입하거나 채무보증을 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자기자본의 100분의 300을 말한다
- ④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 비율은 제271조의1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투자비율 의 산정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 ⑤ 투자목적회사는 그 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투자형 사 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 원에게 그 회사의 재산의 운용 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⑥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49조의 의13제1항제2호의 목적으로 운용하고 남은 투자목적회사재산을 법 제249조의1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① 투자목적회사가 법 제249조의 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에 대한 평가는 제2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⑧ 법 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49조의12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관 하여 필요한 신청서식 및 절차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한다.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① 법 제249조의1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란 법, 이 영과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 1. 「은행법」
- 2. 「한국산업은행법」
- 3. 「중소기업은행법」
- 4. 「한국수출입은행법」
- 5. 「보험업법」
- 6. 「상호저축은행법」
- 7. 「여신전문금융업법」
- 8. 「신용보증기금법」
-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10. 「신용협동조합법」
- <u>11. 「새마을</u>금고법」
- <u>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u> 호에 관한 법률」
- 1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 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15. 「부동산투자회사법」
- 16. 「선박투자회사법」
- 17. 「산업발전법」
- 1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19. 「한국정책금융공사법」
- ② 법 제249조의14제6항제4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 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정관을 위반하여 경영참여

<신 설>

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적인 거 래조건을 벗어나는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 를 업무집행사원의 고유재산 운용에 이용하는 행위

4. 특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나 투자목적회사의 이 익을 해치면서 자기 또는 제3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법 제249조의11부터 제249조의18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이용하는 행위

③ 법 제249조의14제8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란 6개월을 말한다.

제271조의21(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249조의15제1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신 설>

- 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 ② 법 제249조의15제1항제2호 에서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 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 2.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3. 유한회사의 이사 또는 합명 회사의 업무집행사원
- ③ 법 제249조의15제1항제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란 2명을 말한다.
- ④ 법 제249조의1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사항을 말한다.
- 1. 건전한 재무상태: 자기자본이

   차입을 통해 조성된 자금이 아

   <u>닐 것</u>
- 2. 사회적 신용: 다음 각 목의모든 요건에 적합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3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 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 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 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최근 3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에 따 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 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 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 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⑤ 법 제249조의15제7항제5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49조의21제3항제1호 나목에 따른 직무정지의 조치 를 받은 날부터 1개월(직무정 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 우에는 <u>그 기간) 이내에 해당</u>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

<신 설>

<신 설>

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⑥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하고, 등록신청서의 참부서류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하며, 등록검토의 방법·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은 "운용인력"으로, "재무제표와 그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로본다.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집행사 원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 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22(이해관계인과의 거 래 제한 등) ① 법 제249조의1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 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

- 1.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2. 업무집행사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 3.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계열회 사로 보지 아니한다.

가. 당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합투자기구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또는 투자대상기업에 대해공동으로 투자하는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나. 당해 업무집행사원이 운용하는 경영참여성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또는 투자대상기업다.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이익을해칠 우려가 없는 회사로서

<신 설>

<신 설>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회사

- ② 법 제249조의16제1항제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 제8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거래
- 2.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 전원의 동의를거쳐 실행하는 거래
- 3.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 합투자기구의 사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 ③ 법 제249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한도"란 경영참여 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 재산총액의 100분의 5를 말한 다.
- ④ 법 제249조의16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제86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대상자산을 말한다.

⑤ 법 제249조의16제4항제2호 <신 설> 에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 는 유한책임사원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란 경영참여 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지 분을 100분의 30이상 보유한 자를 말한다. 제271조의23(상호출자제한기업집 <신 설> 단 계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① 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 외 의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18제2항 단서 <신 설>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이란 편입일로부터 5년이 경 과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처 분기한 연장 관련 자료를 제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71조의24(지주회사 규제의 특 <신 설> 례) ① 법 제249조의19제2항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서식에 따라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는 방법을 말한

<신 설>

<신 설>

다.

② 법 제249조의19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이상의 금융기관"이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1개이상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나 투자목적회사가 「은행법」에 따른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만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 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 13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제271조의25(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법 제249 조의20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말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의 유한책임사원의 명칭, 사업내 용, 재무현황, 계열회사 변동내 역,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일반현황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유한책임사원의 임원현황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의 유한책임사원의 소유지분현 황 4.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의 유한책임사원간 출자현황 제271조의26(경영참여형 사모집 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49조의21제1항제4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0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별표 10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 를 위반한 경우 3. 별표 10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신 설>

<신 설>

- <u>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u> 를 위반한 경우
- ② 법 제249조의21제1항제5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 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 ③ 법 제249조의21제1항제5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④ 법 제249조의21제1항제7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 2. 법 제249조의21제2항제1호 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한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의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

	<u> </u>
	3.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4. 법 제249조의15제7항에 따
	라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이 취
	<u>소된 경우</u>
<u>&lt;신 설&gt;</u>	⑤ 법 제249조의21제2항제7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
	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
	<u>선권고</u>
	<u>2. 변상 요구</u>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u>&lt;신 설&gt;</u>	⑥ 법 제249조의21제3항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조치"란 제5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
	<u>한다.</u>
<u>&lt;신 설&gt;</u>	⑦ 법 제249조의21제3항제2호

<u><신 설></u>

<신 설>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1. 주의
- 2.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 ⑧ 법 제249조의21제3항제3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 다.
- 1. 경고
- 2.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 ⑨ 법 별표 6 제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① 법 제249조의22제 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0조 제2항의 금융기관(같은 항 제9 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금융기 관은 제외한다) 및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 기관을 말한다.

1. 투자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4.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 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 된 한국무역보험공사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 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② 법 제249조의22제1항제4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 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이란

<신 설>

채권금융기관의 총 채권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또 는 공동으로 해당기업에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하여 체결한 약 정을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22제1항제5호에서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합병·전환·정리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이란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영업양수도(일부양수도를 포함한다), 자산매각, 지분양도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하려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재무제표[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감사인의 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정적의견

이나 의견표명을 거절할 정도 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 표명하 는 감사의견을 말한다) 이상의 감사의견을 받은 것만 해당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의 자본금의 총계가 납입자본금보 다 적은 기업 2.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 대한 부채총계의 비율(이하 " 부채비율"이라 한다)이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한국은행이 발 표하는 기업경영분석에 따른 해당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채비율을 말하 되, 기업경영분석에 해당 업종 의 부채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업종의 평균 부채비율로 한다]의 1.5배를 초과하는 기업 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한 손실액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 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 가. 어음의 부도 나. 외상매출금 또는 수출대금 의 미회수 다. 보증채무의 이행 4.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신

용평가회사로부터 회사채 투자 부적격 등급을 받은 기업 5.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따 른 영업 손실이 최근 2년간 연 속하여 발생한 기업 ④ 법 제249조의22제1항제6호 <신 설>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법 제249조의22제1항제1호부터 제 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업의 계 열회사를 말한다. ⑤ 법 제249조의22제2항 각 호 <신 설>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 다. <신 설> ⑥ 법 제249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⑦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신 설>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 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남은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1. 증권에 대한 투자

<신 설>

<신 설>

- 2.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 피하기 위한 장내파생상품 또 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3. 재무구조개선기업의 인수· 합병에 드는 자금의 대여 또는 지급의 보증
- <u>4.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u> 기대출
- 5.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 사(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회사 를 포함한다)에의 예치
- 6.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 증서
- 7.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 8 법 제249조의22제3항 전단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 ⑨ 법 제249조의22제3항 전단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6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① 법 제249조의22제5항 전단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 <u><신 설></u>

<u>제272조(은행에 대한 특칙)</u> ① ~ ⑤ (생 략)

제10장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

제290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 록) ① 법 제268조제5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

- ① 법 제249조의22제6항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이 정지된 경우
- 2. 투자대상기업이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 3.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 4.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 만료 등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 우
- 5. 투자대상기업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사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u>제3절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u> <u>특칙</u>

제272조(은행에 대한 특칙)

①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u><삭 제></u>

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법 제268조제2항에 따른 등기 사항
-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 3.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 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
- 1. 정관(법 제268조제1항제4호,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 2. 업무집행사원이나 그 특수관계인이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인 회사의 상호와 그 출자내역을 기재한 서면 3.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 <u>가.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u> 표
- 나. 대주주의 성명·주민등록번 호(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 호) 및 소유주식수 등 대주주의

내역

- 4.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5. 그 밖에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그 업무집 행사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268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 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요건 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 다.
- ⑤ 법 제268조제10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 법 제268조제1항제3호의 사항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 3. 그 밖에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등으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
- ⑥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는 그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 음 달 1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모투자전문회사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91조(사원 및 출자) ① 법 제 26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u>나에 해당하는 자</u>
2.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삭 제>

- ② 법 제269조제4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 의 업무"란 제295조제3항 각 호 의 업무를 말한다.
- ③ 법 제269제6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원 이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 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 함한다)인 경우에는 20억원, 개 인인 경우에는 10억원을 말한다. ④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 다)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사모 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에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전체 지 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방 법으로 출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사 원이 출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자하기로 약정하는 방식 으로 출자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사원의
   출자
   방

   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

<u>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u> 한다.

제292조(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① 법 제2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모투자 전문회사가 다른 사모투자전문회 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 는 방법을 말한다.

1. 지분증권, 신주인수권(그 밖의 신규발행 지분증권을 인수할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 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이하이 항에서 "지분증권등"이라한다)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지분증권등을 공동 또는 단독 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지분 증권등을 상호 양도 또는 양수 하는 행위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 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② 법 제270조제1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삭 제>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 하는 회사를 말한다.
-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3.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 5. 외국회사 및 그 종속회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속회사에 상당하는 외국회사를 말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중 다음 각 목의 자산을 합한 금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그 외국회사
- <u>가.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발</u> <u>행한 증권</u>
- <u>나.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한 금전채권</u>
- 다.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나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 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이 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

상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권리의 행사 등으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의 회사와 비슷한 회사로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 산
-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외국회사 및 그 종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 제2항제5호가목·나 목 및 라목의 자산을 합한 금액 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회사는 제2항제5호에 따 른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 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 3.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같은항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등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 금융기관과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재무구조개선을 위 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4.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 <u>다)의 합병</u>·전환·정리 등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 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 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④ 법 제270조제1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권 관련 사채권(법 제71조제4 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 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294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경 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과 주권 관련 사채권의 전 환권 · 신주인수권의 행사 등으 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의결 권 있는 발행주식(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정한 발행주식을 말한 다)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 10 이상이 되는 경우
- 2. 투자계약 등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투자하는 경우
- ⑤ 법 제270조제1항제4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내파생 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 1. 법 제2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대상기업(이하 "투자대상기업(이하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권이나 그 증권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 2.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외화 증권에 대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 생상품
- ⑥ 법 제270조제1항제7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투자를 말한다.
- 1. 투자대상기업의 금전채권에

- 대한투자(법제270조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따른투자를목적으로하는경우만해당한다)
- 2. 투자대상기업의 사업구조나 지배구조 등을 개선하는 과정에 서 처분하는 부동산(지상권·지 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 다) 또는 금전채권 등에 대한 투자
-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투자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투

   <u>자</u>
- <u>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u> <u>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 당하는 시설 및 설비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시설
   및 설비
-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3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시설마.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제293조(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등)
① 법 제270조제2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대출"
이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을 말한다.

- ② 법 제27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이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을 말한다.
- ③ 법 제270조제2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④ 법 제270조제2항제4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운용 하는 방법을 말한다.
-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
   선
- 2.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u><삭 제></u>

<삭 제>

제294조(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제한 등) ① 법 제270조제3 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하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 ② 법 제270조제3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이 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 권을 취득하기에 부족한 경우 2 제292조제6항제4호의 시석 및
- 2. 제292조제6항제4호의 시설 및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 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법 제270조제4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
- ④ 법 제270조제4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이 정지

   된 경우

- 2. 투자대상기업이 3개월 이상조업을 중단한 경우
- 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⑤ 법 제270조제5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하다.
- ⑥ 법 제270조제6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 ① 법 제270조제6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중단된 경우
-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⑧ 법 제270조제6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의 처 분이 가능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말한다.

⑨ 법 제270조제9항에 따른 보고는 분기별로 하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295조(투자비율의 산정방식 등)
① 법 제270조제1항제1호 및 제2
항제3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각각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다.

② 법 제270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본문의 투자비율은 「국가 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이 되는 경우로서 제291조제5항에 따라 출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자하기로 약정하는 방식 외의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1. 법 제27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기금의 출자금 범위에서 증권을 취득하 는 경우에는 그 출자금액과 그 증권취득금액을 각각 제외하고 계산한다.

2. 법 제270조제3항 본문에 따른

<u><삭 제></u>

-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사모투 자전문회사재산에서 기금의 출 자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 ③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 행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3자에 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투자대상기업 선정이나 투자 목적회사의 설립 또는 선정
- 2.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시기·방법 등의결정
- 3.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이나 투 자목적회사재산에 속하는 지분 증권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로서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고시하는 업무
- ④ 제292조제3항에 따라 사모투 자전문회사가 외국회사에 투자 한 경우에는 투자한 날부터 6개 월 이내에 제292조제3항 각 호 의 기업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 여야 한다.

⑤법 제270조제3항 단서, 제4항 단서, 제5항 단서 및 제6항 단서 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한다.

제296조(투자목적회사) ① 법 제 271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 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 ② 법 제271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를 한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으로서 출자전환 등을 한 자를 말한다.
- ③ 법 제27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투자목적회사가 차입하거나 채무보증을 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자기자본의 100분의 300을 말한다.
- ④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은 제2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의

<삭 제>

투자비율의 산정방법과 같은 방 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 ⑤ 투자목적회사는 그 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 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그 회사 의 재산의 운용을 위탁하여야 한다.
- ⑥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71조 제1항제2호의 목적으로 운용하고 남은 투자목적회사재산을 법 제27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수 있다.
- ① 투자목적회사가 법 제270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에 대한 평가는 제2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⑧ 법 제27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70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97조(업무집행사원 등) ① 법

<u><삭 제></u>

제27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 란 법, 이 영과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 1. 「은행법」
- 2. 「한국산업은행법」
- 3. 「중소기업은행법」
- 4. 「한국수출입은행법」
- 5. 「보험업법」
- 6. 「상호저축은행법」
- 7. 「여신전문금융업법」
- 8. 「신용보증기금법」
-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10. 「신용협동조합법」
- 11. 「새마을금고법」
-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 1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 의 설립에 관한 법률」
-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15. 「부동산투자회사법」
- 16. 「선박투자회사법」
- <u>17. 「산업발전법」</u>
- 1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② 법 제272조제6항제4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 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관을 위반하여 사모투자전 문회사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2.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을 운용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적 인 거래조건을 벗어나는 불공정 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3.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에 관한 정보를 업무집행사원의 고유재 산 운용에 이용하는 행위

4. 특정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 자목적회사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 하는 행위

5. 법 제269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③ 법 제272조제8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 월을 말한다.

제297조의2(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27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삭 제>

- ② 법 제272조의2제1항제2호에서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유한회사의 이사 또는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
- ③ 법 제272조의2제1항제3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명을 말한다.
- ④ 법 제272조의2제7항제5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운용업무를 시작한 후 정당한사유 없이 그 업무를 6개월 이상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78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직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직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

 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

 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

 득한 경우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⑤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하고,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같은 조제2항(제4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하며, 등록검토의 방법・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경우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투자운용인력"은 "운용인력"으로,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와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집행사원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u>제299조(지주회사 규제의 특례)</u>
① 법 제276조제2항에서 "대통령

<삭 제>

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27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이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은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만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지아니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사모 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0조(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78조제1항제6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삭 제>

- 1. 별표 10 제3호에 해당하는 경

   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

   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

   를 위반한 경우
- 2. 별표 10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

   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3. 별표 10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법 제278조제1항제7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 ③ 법 제278조제1항제7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④ 법 제278조제1항제8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에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 용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

   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

   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

   득한 경우
- 3. 법 제27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의 기간 중에업무를 한 경우
-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 5. 법 제272조의2제7항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⑤ 법 제278조제3항제7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를 말한다.
- 1.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 2. 변상 요구
-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 보

-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 ⑥ 법 제278조제4항제1호마목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① 법 제278조제4항제2호마목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1. 주의
- 2.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조치
- ⑧ 법 제278조제4항제3호바목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u>1. 경고</u>
- 2.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조치
- ⑨ 삭제 <2013.8.27.>
- ① 법 별표 6 제27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00조의2(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78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같은 항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금융 기관은 제외한다) 및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 관을 말한다.

- 1.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한국자산관리공사
-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 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4.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 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 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 <u>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u>된 한국무역보험공사
-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

<u><삭</u>제>

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
- 는 외국 금융기관
- ② 법 제278조의3제1항제4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 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란 채권금융기관의 총 채권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개별 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약정을 체결하는 기업으로서 금융위원 회의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 다.
- ③ 법 제278조의3제1항제5호에서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합병·전환·정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이란 「상법」에 따른 합병, 분할, 분할합병,주식교환,주식이전, 영업양도(일부양도를 포함한다),자산매각,지분양도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하려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재무제표[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감사인의 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정적의견이나의견표명을 거절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 표명하는 감사의견을 말한다) 이상의 감사의견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상의 자본금의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

2.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 대한 부채총계의 비율(이하 "부채비율"이라 한다)이 업종별 평균부채비율[한국은행이 발표하는기업경영분석에 따른 해당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채비율을 말하되, 기업경영분석에 해당 업종의 부채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업종의 평균 부채비율로 한다]의 1.5배를

초과하는 기업

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한 손 실액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

가. 어음의 부도

<u>나. 외상매출금 또는 수출대금의</u> 미회수

다. 보증채무의 이행

4.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신용 평가회사로부터 회사채 투자부 적격 등급을 받은 기업

5.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따른영업 손실이 최근 2년간 연속하여 발생한 기업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계열회산
- ④ 법 제27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⑤ 법 제27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 ⑥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 사는 법 제27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u> 남은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 1. 증권에 대한 투자
- 2.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로서 그 증권이 나 그 증권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 3. 재무구조개선기업의 인수·합병에 드는 자금의 대여 또는 지급의 보증
- 4.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 대출
- 5.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 을 포함한다)에의 예치
- ⑦ 법 제278조의3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 ⑧ 법 제278조의3제3항 전단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⑨ 법 제278조의3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 ① 법 제278조의3제6항 단서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이 정지 된 경우
- 2. 투자대상기업이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 3.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 4.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 사의 존립기간 만료 등 해산사 유가 발생한 경우
- 5. 투자대상기업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사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립 및 운용 등)
  - ① (생략)
  - ② 거래소는 법 제399조제2항 에 따라 공동기금을 손해배상 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위약한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을 우 선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 분에 대하여는 회원관리규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 제36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 립 및 운용 등)

- ① (현행과 같음)
- ② 거래소는 법 제399조제2항 에 따라 거래소의 재산과 공동 기금을 손해배상에 충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 1. 위약한 회원이 적립한 공동 기금을 우선하여 사용할 것

③~⑧ (생 략)

제363조(구상권의 행사 등)

- ① (생략)
- ② 거래소는 위약한 회원으로 부터 구상한 경우에는 다른 회 원이 적립한 공동기금의 사용 분을 그 사용비례에 따라 우선 하여 보전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때에는 위약한 회원이 적 립한 공동기금의 사용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 저 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 (제57조, 제387조제1항부터 제3 항까지 및 별표 20에 따라 금 융위원회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증권선물

- 2. 제1호에 따라 충당한 후에 도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재산 중 회원관리 규정으로 정하는 금액을 우 선하여 사용할 것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충 당한 후의 부족분에 대하여 는 회원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 ③~⑧ (현행과 같음)

제363조(구상권의 행사 등)

- ① (현행과 같음)
- ② 거래소는 위약한 회원으로 부터 구상한 경우에는 회원관 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가 배상한 금액 및 공동 기금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은 비용에 충당한다.

테387조의2	(민감정	보	및	고유식	
별정보의	처리)	1			

위원회(제387조제3항 및 별표 2 0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사 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 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 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28. (생 략) 1. ~ 28. (현행과 같음) 29. 법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 29. 법 제249조의10----- 경 자전문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 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 보고-----29의2. 법 제249조의15에 따른 29의2. 법 제272조의2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사원의 등록에 관한 사무 \_\_\_\_\_ 29의2. ~ 29의 4. (생략) 29의3. ~ 29의 4. (현행과 같음) 30. ~ 41. (생략) 30. ~ 41. (현행과 같음) 제38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금 제38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17. (생략)

18. 제292조에 따른 사모투자전 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2014 년 1월 1일

19. ~ 21.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 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1. ~ 15. (생략)

16. <u>제271조의2에 따른 전문사</u> <u>모집합투자기구</u>의 적격투자자 범위: 2015년 1월 1일

< 신 설 >

< 신 설 >

1. ~ 17. (현행과 같음)				
18. 제271조의15에 따른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				
<u>합투자재산</u>				
19. ~ 21. (현행과 같음)				
②				
<del></del> .				
1. ~ 15. (현행과 같음)				
16. <u>제271조에 따른 전문투자</u>				
형 사모집합투자기구				
<u>16의2. 제217조의13에 따른 경</u>				
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보				
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u>16</u> 의3. 제217조의21제5항에 따				
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취소				

## < 신 설 >

월 1일

24. ~ 33. (생략)

17. ~ 20. (생 략)
21. 제290조에 따른 사모투자전
문회사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22. 제297조의2제4항에 따른 사
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
의 등록취소 요건: 2015년 1월
1일
23. 제300조에 따른 사모투자전

문회사에 대한 조치: 2015년 1

요건: 2015년 1월 1일 16의4. 제271조의26에 따른 경 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2015년 1월 1일

17. ~ 20. (현행과 같음)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24. ~ 33. (현행과 같음)